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39
------------	------

2021년 6월 1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송도호 의원 외 9명

나. 제안일자 : 2021년 5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01일

라.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도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마을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우수한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시내버스업계에 비해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맞추어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버스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04. ~ 2021. 6. 11.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1) 버스정책과-17836(2021. 6. 9.)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원안가결

-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2020.6.9. (법 제 50조 제7항) 신설되어 법적문제가 없음
- 시내버스에 비해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운수종사자 인력 확보를 위해 조례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됨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 제3조제1호2)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³⁾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 제24조⁴⁾에서는 마을버스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각 사업용 자동차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 이하 생략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생략-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관련 종사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난 '20년 6월 '시·도는 교통안전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 제50조제7항 등⁵⁾이 개정된 바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교육·훈련비, 자격시험 응시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운전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동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희망자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⑦ 국가 또는 시·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서비스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5호, 2020. 6. 9.,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6(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교육·훈련비 2.자격시험 응시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의2(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교육·훈련비</u> <u>2. 자격시험 응시료</u>